

본인확인	담당	책임자

대출계약 철회(취소) 신청서

(주) 하나은행 귀하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귀 은행간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를 신청합니다.

▣ 대출계약 내용

차주		계좌번호	
상품명		금액	
실행일		대출계약 철회기간	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(실행일 미포함)

<유의사항>

- 대출계약 철회는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」 제4조의2에 의해 **철회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**
- 대출계약 철회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-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단, 예금담보대출 제외)

본인은 대출계약철회권 주요내용 및 비용에 대한 비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대출계약 철회신청 취소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철회 신청을 취소합니다.

▣ 취소사유

- 중도상환이나 철회하지 않고 대출 유지함
 기타 ()

중도상환수수료와 철회 신청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관한 충분한 비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